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2005. 7. 31)됨에 따라 기금 운영심의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금 용자대상 완화, 생활안정기금의 학자금 용자대상 성적기준 폐지, 용자금 상환연장기간을 1년 이내 1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확대하며, 기 용자한상환금 중 회수가 불능한 채권정리 등을 위하여 감면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3. 주요골자

- 가. 기금운용 심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 (안 제2조의2)
- 나. 규제완화 : 학자금 용자대상 ‘성적기준(80점 이상)’ 폐지(안 제3조제3항) 및 용자금 상환기간 연장 ‘1년 이내 1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확대(안 제9조 제2항)
- 다. 감면조치 : 회수 불능채권 정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 감면사항 신설 (안 제17조의2)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가 2005. 7.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에 관한 심의기능을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정조정위원회로 변경조정하고
- 주민소득지원금 용자대상 완화, 생활안정기금의 학자금용자대상 성적기준(80점 이상)폐지, 용자금 상환연장기간을 1년 이내 1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조치는 주민편익제고와 위민봉사행정구현에 기여 한다고 판단되며
- 위원회 변경에 따른 기능폐지와 관련 조문 등을 정비보완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 확보는 물론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향상에도 일용 기여한다고 생각되고

□ 기 용자한 상환금 중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문제에 대하여는

- 법령상 감면에 관한 위임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33조(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동법 시행령 제156조(기금의 운용. 관리)에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만 정하여져 있음
- 그러나 채무의 감면은 국민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기금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에 필요 하다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이행연기의 특약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3조(감면) 규정에 의거

-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경우에 일정기간 이행연기 특약을 할 수 있고, 최초의 이행연기 특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채권과 그에 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 회수불능 용자금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은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 충분한 조치라고 인정되며
-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강서구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중구도 용자금 등에 대한 감면조례를 제정 기회 운용 중에 있으므로
- 타 시·구의 감면조항이나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면 조항의 악용내지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규칙에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특히 행정자치부예규 제158호(2005. 1. 3)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채권의 소멸과 이행연기특약 등에 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고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부칙에 사하구 복지위원회의 폐지에 관하여 명문화 되어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 위 조례 일부개정은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